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르 9,37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성 요한 에우데스와 성녀 마리 유프라시아의 가르침에서 사명을 위한 영감과 지침을 얻는다. 창립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마리아의 성심에서 우리 열성의 정신을 이끌어 낸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증거하는 환대, 친절, 이해, 사랑 어린 봉사의 복음적 정신이다.”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 회헌 8

“모든 생명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가장 힘 없고 가장 연약한 이, 병든 이, 연로한 이, 태어나지 못한 이, 가난한 이조차도 하느님 모상으로 영원히 살도록 지어져 최고의 경외와 존경을 받아 마땅한 하느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생명의 날 메시지
2013년 7월 28일 영국 및 아일랜드에서

우리는 소녀들이 모두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성으로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여자 어린이의 필요성에 응답할 때 모든 프로그램이 명백하고 상세하고 유효한 아동 안전보호 정책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책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유엔 인권보호 도구를 사용한다.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 소녀들에 대한 입장문, 2018년

목 차

정책 관리 정보	3
수도회 리더십 팀의 메시지	4
핵심 메시지	7
1. 서론	9
2. 정책 선언문	9
3. 목적	10
4. 범위	10
5. 기본 원칙	11
5.1 교회의 복음적 가치와 교회법적 규범	11
5.2 국제법	11
6. 정의	13
7. 역할과 책임	15
8. 지역 차원의 고려 사항	19
9. 안전보호에 대한 약속의 기준	21
9.1 기준 1 - 안전한 환경 조성 and 유지	22
9.2 기준 2 - 학대의 우려, 의혹, 혐의에 대한 대응	24
9.2.1 보고 순서도	26
9.3 기준 3 - 기준의 실행과 관찰	30
10. 기준 절차 1 - 안전한 환경 조성 and 유지	32
11. 기준 절차 2 - 학대의 우려, 의혹, 혐의에 대한 대응	35
12. 기준 절차 3 - 기준 절차의 이행과 관찰	40
부록1 학대 유형별 세부 정의	42
부록2 수도회 행동 강령	45
부록3 안전보호 사건, 불만, 보고 양식	48
부록4 관련 문서 목록	51
부록5 보고 순서도(이름 명시)	52

정책 관리 정보

제목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
소유 (책임)	수도회 리더십 팀
저자 (책임)	수도회 안전보호위원회 및 수도회 안전보호고문
버전	2.0
승인	수도회 리더십 팀
승인일	2022년 3월 28일
적용 대상	수녀와 관련인
재검 기한	3년
다음 재검일	2025년
관련 정책 및 절차	본 정책에 세부 설명

안전보호의 길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는 교회의 실체로서 그리고 인도적 발달 분야의 주요 행위자로서 법적, 도덕적, 영적 의무의 여정 안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회에 속한 모든 Unit, 공동체, 사도직은 최고의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호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019년 수도회의 아동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교회법 변호사, 안전보호 분야 전문가, 수도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된 교회법에 따르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도 포함하도록 수도회는 안전보호 정책 및 절차의 새 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 버전은 이전의 모든 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지금까지 수행했던 취약한 상황의 아동과 성인을 보호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보강할 것입니다. 학대와 그 영향은 물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조치의 주요 목표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을 보호하고 학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학대를 투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치유하고 현재의 보호 시스템이 유효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회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나눔과 배움의 문화를 길러야 합니다.

사고방식과 문화의 변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이 분야의 모든 단계에서 기본 교육과 보수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사도직과 연로한 수녀들의 요양공동체에서 일하는 모든 수녀와 관련인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수도회는 전 세계적인 안전보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수도회 리더십 팀은 안전보호 임무의 이행 책임을 맡았습니다. 리더십 팀은 새로운 안전보호 문화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언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자 지역 대표를 보호 인력으로 임명했습니다. 명백한 비전과 체계로 이룬 과업을 기반으로 우리 수도회의 안전보호 정책과 절차를 선교 지역과 해당국가의 법과 문화에 맞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학대도 은폐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전보호가 모두를 위한 것이며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대받는 사람과 학대하는 사람과의 동반

학대를 겪는 모든 사람은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사건을 해명하고, 심리적, 영적 동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따라야 하며 이는 개인적인 회개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수도회는 착한 목자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친절, 연민, 정의로 살아내는 모든 Unit, 공동체, 사도직이 모든 이를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인내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포용하는 열성은 각 사람의 권리를 수호하는 모든 이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모든 수녀와 관련인은 모든 이를 위해 안전하고 환대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리아 수산나 프랑코 수녀 Sr. Maria Susana Franco

수도회 제1평의원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

2015-2022

저는 이 기회에 수도회 리더십 팀과 함께,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 개발 여정을 시작하고 마친 엘렌 켈리Ellen Kelly 수녀님, 수산나 프랑코Susana Franco 수녀님, 전임 리더십 팀 수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정은 많은 사람들의 전문 지식, 경험, 통찰력을 투입하는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수녀회 관련인으로부터 이끌어낸 이 안전보호 정책을 이제 반포하고 시행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수도회 안전보호위원회, 수도회 안전보호팀, 착한목자국제재단(GSIF),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의 개정에 참여한 관련인 모두에게 과업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 과정에 참여해 주실 많은 분들에게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에게 우리의 지원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제31차 수도회 총회의 지침과, 아동, 여성, 성인이 착취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이 안전보호 정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책 실현을 향해 함께 노력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정책은 각 사람, 공동체, 사도직, 수도회 사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과업은 각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 정책의 더 깊은 열성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행동, 봉사로 우리가 함께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배려하고, 화해하는 경험을 구현하는 염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상처, 피해, 트라우마가 없는 환경 조성, 모든 이를 위한 환대, 안전, 치유 공간의 창조를 위해 전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존 마리 로페즈 수녀Sr. Joan Marie Lopez

수도회 리더십 팀 책임자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

2022-2028

이 정책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정책은 자비와 화해의 사명에 대한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이하 수도회)의 수세기 동안의 헌신을 표현합니다. 이 정책은 특히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하느님이 주신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특히 소녀와 여성을 소중히 여기지만 취약한 상황에 있는 모든 아동과 성인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떤 학대나 폭언으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보장합니다. 이 정책은 모든 사도직과 공동체 안에서 -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 수도회가 보살피고 관심을 두는 모든 이에게 확장됩니다. 이 정책은 우리 공동체와 사도직 내의 모든 이를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는 헌신의 시작입니다. 특히 함께 살면서 섬기는 우리 사도직의 특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권력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학대가 생길 수 있는지도 눈여겨봅니다. 우리는 이 정책을 우리의 사명과 전통에 연계하여 봅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의 틀 안에서 우리 시대 최고의 사회 과학 지식과 인권 이해를 이 정책에 적용했습니다.

이 정책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수도회 리더십 팀이 승인하고 배포한 이 정책은 전체 수도회에 적용합니다. 이 정책은 수녀는 물론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모든 관련인(예: 유급 직원, 자원 봉사자, 자문위원, 공동체나 사도직 방문자 등)을 포함합니다. 모든 단계의 조직은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안전과 아동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의 요구 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 및 국가의 민법과 교회법을 준수하고, 특별 이슈와 현지 여건에 대한 지역적 맥락을 보장합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지역, 국가, 지방, 공동체 및 사도직 차원에 대한 정책을 다음 요구 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호 정책에 대한 지식 및 준수
- 착취, 학대, 위험 요인, 역동적 인간 관계 등의 교육학
- 학대 혐의를 보고하는 명령, 의무, 절차의 수행 능력
- 피해자/생존자의 돌봄과 동반
- 고소 대상의 돌봄과 관리
- 안전보호에 대한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수도회 Unit은 이 정책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정책은 생명력 있고 의미 있는 문서입니다. 수녀, 공동체, 사도직, 수도회 관련인 모두가 이 정책을 옹호합니다. 이 정책은 수도회에 속한 모든 이가 이 정책의 중요성과, 사람들을 해로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 그룹 내의 역동은 물론 - 동기와 행동의 중요성도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려면 자기인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론적인 문서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실천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안전보호사무국에 연락하세요.

이메일 주소: safeguarding@gssweb.org

1. 서론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이하 수도회)는 각 사람의 존엄성과 통합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거의 400년 동안 수도회는 폭력, 차별, 빈곤, 그 밖의 형태의 사회적 소외와 개인적 취약성의 상태에 직면한 소녀, 여성, 아동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도직을 수행해왔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고무된 사도직을 해내기 위해, 수도회는 각 시대의 최고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인간 인격의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인간의 존엄성, 영적 화해, 가족 구성원 각자의 타고난 인권이 항상 우리 공동체와 사도직의 중심에 있었다."

(수도회 책임자의 메시지에서 발췌 - 아동 안전보호 정책, 2019년 9월)

수도회는 특히 인간 존엄성의 기본 원칙 중 하나를 통해 회헌의 지침에 따르고 가톨릭 사회교리의 인도를 받는다. 이 원칙에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함축되어 있다. 착취와 학대의 위험에 대항하여 수도회와 관련된 모든 이의 안전보호를 위한 우리의 정책은 수도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가치가 뒷받침한다. 이 가장 중대한 책임을 인식하기에 수도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든 일을 촉진한다. 수도회는 복음적 가치와 기본적 인권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따라 수도회는 그들의 참살이(well-being)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2. 정책 선언문

수도회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헌신한다. 우리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의 최선의 이익과 발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돌봄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원칙, 세계인권선언(UDHR)의 원칙, 수도회의 영성과 카리스마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모든 수녀와 관련인은 이러한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목적

이 정책은 수도회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안전보호 의무에 대한 결정적인 대응이며 수녀와 관련인에게 안전보호와 관련된 책임을 알려준다. 수도회는 아동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을 직간접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도회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착취와 학대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이 바람직한 실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각 사람에게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해로움으로부터 보호를 보장한다.
- 수도회의 모든 수녀와 관련인에게 특정한 안전보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주어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보호와 그 실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식을 유지한다.
- 수도회 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모든 Unit을 지원한다.
- 착취와 피해를 예방하는 문화를 보장한다.
- 피해자/생존자에게 우선적 접근 방안을 제공한다.

4. 범위

이 정책의 범위는 공동체와 사도직 안에서 수녀와 관련인이 마주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의 안전보호와 관련된다. 안전보호는 모든 단계의 리더십 팀, 착한목자국제재단(GSIF), 수녀, 관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5. 기본 원칙

5.1 교회의 복음적 가치와 교회법적 규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존엄성, 정의의 복음적 가치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과 사도직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상기시켜 준다. 따라서 이 정책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복음적 가치와 교회법적 규범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 공정, 자선의 원칙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 교회법전, 특히 제2권과 제4권(1983년 이후 수정)
- 자의 교서 - 성사의 거룩함을 보호(2001)The Motu Proprio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2001)
- 자의 교서 -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2019)The Motu Proprio Vos estis Lux Mundi (2019)
- 중범죄에 대한 규범(2021)The Normae de Gravioribus Delictis (2021)

5.2 국제법

안전보호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국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 세계인권선언(UDHR), 1948년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년
-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1979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2006년
- 수도회가 활동 중인 국가의 국내법

우리는 또한 유엔과 비유엔 관련인의 성착취 및 학대 근절에 관한 선언문과 유엔 사무총장의 게시판(ST/SGB/2003/13)의 성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 하에서 이루어진 헌신적 약속의 옹호를 목표로 한다. 이 약속은 성착취 및 학대(SEA)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관련된 핵심 행동을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196개 국가들이 비준했다(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미국 제외). UNCRC의 4가지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생존과 발달
- 비차별
- 아동의 참여 및 말할 권리
- 아동의 최선의 이익

UNCRC에 포함된 54개 조항 중 현재 정책과 가장 관련 깊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아동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조** 모든 성인은 항상 아동을 위해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제6조** 아동은 생존하고 발전할 권리가 있다.
- 제12조** 아동은 의견을 말할 권리와 그 의견이 경청 받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 제19조** 아동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이 주요 활동 목표 인구이거나 목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수녀와 관련인은 시행해야 하는 특정 아동 보호 조항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권리 기반이므로 UNCRC의 조항과 국가법에 명시된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UDHR)은 인권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는 문서이다. 선언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이 선언은 처음으로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인권,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이 정책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에 대해 잠재적인 착취 및 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해를 끼치지 않음"의 접근 방식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한다. 해를 끼치지 않음은 공동체, 사도직,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조직의 책임을 나타낸다.

6. 정의

6.1 아동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가리킨다(문화적 규범에 관계없음).

6.2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취약한 성인, 보호가 필요한 성인,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성인

18세에 이르렀음에도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제약이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이나 정서적 학대를 당했을 때, 스스로 방어할 수 없거나, 스스로 보호할 수 없거나, 스스로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일방적 권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돌봄 또는 사도직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가이거나 사도직 혹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다른 성인에게 자신의 권력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신뢰, 윤리, 도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6.3. 학대(부록 1 참조)

책임, 신뢰, 권력 관계의 맥락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인의 건강, 생존, 발달, 존엄성에 실제적 혹은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이나 태만한 대우, 상업적이거나 기타의 착취를 가리킨다.

6.4 피해자/생존자. 피해를 입은 사람, 학대의 대상인 사람

학대나 착취를 받은 사람(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을 가리킨다. '생존자'라는 용어는 힘, 회복력, 생존 능력을 내포하기 때문에 '피해자'보다 선호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을 어떻게 식별하기를 원하는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6.5 고소인

학대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6.6 고소의 대상. 피고, 응답자, 가해자

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에 대해 의혹, 우려, 인지, 혐의가 제기된 사람을 가리킨다.

6.7 공동체

지역 수녀원, 요양공동체, 거주지 혹은 양성 프로그램 중인 수도회의 수녀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도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수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6.8 사도직

수도회의 후원 하에 있거나 수도회와 자발적으로 제휴한(예를 들어 역사적 유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프로젝트, 서비스, 프로그램, 지역 봉사 활동, 사목적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매우 공식적인 조직에서부터 비공식적인 프로젝트, 심지어 수도회의 수녀나 관련인이 참여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원 봉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활동의 모든 조직이 포함된다.

6.9 관련인

직원, 자원 봉사자, 비상임 이사, 수탁자, 자문위원, 계약자, 기관 직원, 언론인/미디어 종사자, 유명인과 정치인 등의 프로그램 방문자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수도회의 사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수도회의 사명에 속한 모든 사람은 어떤 식이든 수녀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돌봄, 양육을 보장할 필수적인 책임을 진다.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전보호 정책의 유지와 실행을 보장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을 여기에 서술했는데, 해당 직책의 사람들 간의 지속적 훈련, 토론, 해석도 책임의 일부이다. 이 책임에 대한 개요는 간략한 용어로 설명했다. 각 개인과 그룹은 책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7. 역할과 책임

아래 표는 주요한 책임에 대한 개요이다.

수도회의 수녀와 관련인

책임

- 안전보호 정책의 모든 관점을 알고 이해하고 준수한다.
- 특정 활동 영역에서 돌봄, 양육, 안전, 참살이(well-being)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학대, 자기 인식, 인권의 분야에서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받는다.
- 학대 예방, 인권 증진을 위한 지역망에 적절하게 참여한다.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의 학대에 관한 지역의 법률/규정뿐 아니라 지역/국가 차원에 부합하는 특정한 위험 영역도 알아야 한다(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아동 노동에 대한 경각심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수도회 리더십 팀(CLT)

책임

- 모범 실천 사례를 요약하고, 국제 돌봄 기준을 강화하며, 교회법과 민법을 준수하는 포괄적인 서면 안전보호 정책을 개발하고 계속 갱신한다.
- 수도회 모든 공동체, 사도직, 단체에서 시행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수도회 행정 단위와 부서나 사무실에 이 정책의 전 수도회적 전파를 보장한다.
- 이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맡을 유능한 인력을 임명하고 감독한다.

- 수도회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와 과정을 정의한다. 여기에 수도회 리더십 팀과 수도회 전체의 적절한 모든 단계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과정과 채널이 포함된다.
- 수도회가 지역, 국가, 지방, 사도직에서 우수한 정책을 각 단계별로 적절히 가지고 있는지, 그 정책을 알리고 시행하는지 감독하고 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 수도회를 위한 법률 상담과 기타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
- 수도회 전체의 안전보호 상태에 대해 수도회에 보내는 연례 보고서를 준비한다. 여기에 혐의와 해결, 의미 있는 발전, 특별한 상황의 발생, 지속적인 교육 및 양성 활동 등에 대한 통계가 포함될 수 있다.

수도회 리더십 팀이 지명한 수도회 안전보호 인력

책임

- 수도회 리더십 팀이 지정한 방향과 역할에 따라 수도회 안에서 안전보호 실천을 감독하고 관찰하면서 수도회 리더십 팀을 지원한다.
- 수도회가 학대와 관련하여 연루된 유력한 혐의나 조사 과정에 대해 수도회 책임자에게 조언하고 책임자와 상의한다.
- 안전보호 정책과 절차를 검토한다.

Unit 책임자와 리더십 팀

책임

- 적절한 안전보호 구조와 인력이 Unit 전체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보호 정책의 개발, 실행, 관찰을 위한 적절한 자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의 실행을 감독하고 관찰한다.

- Unit의 구조와 관련된 안전보호/보호에 관한 지역의 사도직 정책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서로 다른 단계의 정책은 상호 보완하고 안전보호 기준을 따라야 한다.
- 학대에 대한 모든 우려와 혐의를 다루기 위해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를 지원한다. 안전보호 고문이 수도회의 안전보호 이메일(safeguarding@ gssweb.org)로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행정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
- (교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교회 당국에 알린다. 어떤 분쟁이든지 민법 변호사, 교회법 변호사, 수도회 리더십 팀이 임명한 인력과 중요한 협의를 한 후에만 확정한다.
- 안전보호 인력(예를 들어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 안전보호 담당자, 안전보호 위원회 등)을 임명하여 Unit이 이 정책과 Unit의 모든 안전보호 문제를 감독하고 실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 수도회 리더십 팀(또는 지명된 대리인)에게 보내는 Unit의 안전보호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한다. 여기에 혐의와 해결, 지역 정책 및 양성의 현황, 의미 있는 발전 등에 대한 통계가 포함될 수 있다.
- 수도회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 때문에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모든 공동체나 사도직 안에서 이 정책과 원칙의 효과적인 통합을 감독한다. 이것은 연로하거나 병약한 수녀들을 돌보는데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양성 중인 젊은 수녀들에게도 적용한다.
-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의 요구 사항을 알아야 한다.
- 수도회와 Unit 안전보호 정책에 부합하는 권한 영역에서 안전보호 정책을 개발, 보급, 적어도 3년마다 갱신하고 민법과 지역의 보고 규정 준수를 보장한다.
- 직원과 모든 관련인을 포함하여 사도직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분석하여 연중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인권의 모든 영역에서 최신의 교육학과 실습을 포함해야 한다.
- 책임의 구조를 마련하여 사도직의 권한 영역 안에서 학대와 학대의 상황에 관련된 문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학대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정규적인 사도직 연례 보고서에 포함될 수도 있음)를 감독기관과 그들의 권한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출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방법, 자신의 권리를 알기 위한 교육, 학대와 위험에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절차의 개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사도직을 위한 과정들을 개발한다.

Unit/국가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SFP)

(각 Unit 이 적어도 두 명의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 수녀와 평신도 관련인 각 한 명을 추천)

책임

- 안전 보호에 대한 인식 높이기와 교육을 포함하여 안전 보호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고 지휘한다.
- 공동체/사도직의 안전보호 담당자를 지지한다.
- 학대에 대한 우려나 혐의에 대해 모든 보고를 받고 이것을 Unit 책임자와 안전보호 고문에게 수도회 안전보호 이메일safeguarding@gssweb.org로 보고하며(해당되는 경우 착한목자국제재단의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에게 보고), 지역민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아직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 당국에 보고한다.
- 행정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

공동체/사도직 차원의 안전보호 담당자

책임

- 지역 안전보호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고 지휘한다.
- 학대에 관한 모든 우려와 혐의를 Unit/국가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어떠한 우려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안전보호 담당자의 역할이 아니다).

8. 지역 차원의 고려사항

수도회가 지리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므로 안전보호를 위한 이해와 처리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무엇이 착취와 학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수도회는 수녀, 관련인, 기타 기관(재정지원기관 포함)에게 안전보호 정책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조정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에는 민감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에게는 해로운 관행을 용납하지 않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기준

9. 안전보호에 대한 약속의 기준

수도회는 우리가 접촉하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에 대해 최고 수준의 안전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한다.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준이 우리의 활동을 안내한다. 이 기준은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아동 인권 문서 및 약속에 요약되어 있는 원칙을 활용한다.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때때로 통제할 수 없는 기능 시스템이나 지원 서비스의 부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일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기준의 준수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반적인 역량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다양한 관련 정책과 절차를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기준은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하며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동시에 어떤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는 일부 기준이 다른 곳보다 적용하기가 더 어렵거나 도전이 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 관행과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에게 제공되는 안전보호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 한 지역 상황에 맞추어 기준과 지침을 적용한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안전보호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 1 안전한 환경 조성 and 유지

(교육과 안전보호 메시지의 전달 포함)



기준 2 학대의 우려, 의혹, 혐의에 대한 대응

(피해자에 대한 돌봄/지원과 고소 대상자에 대한 관리 포함)



기준 3 기준의 실행과 관찰



9.1 기준 1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유지

기준 1의 성공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준칙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환경

- 수녀, 관련인을 모집하고 수도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적합성을 평가하는 합의된 절차가 있다.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을 위하여 일반인들의 적절한/예상된 행동 기준을 문서화한 지침이 있다.
- 수도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이 개인으로서 경청 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장려한다.
- 수녀와 관련인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에게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다른 수녀와 관련인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다(불만 신고 정책과 내부고발 정책을 포함).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인과 함께 일할 때 수행하는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가 있다.
- 공동체/사도직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을 수도회 환경에서 적절히 감독하고 보호할 것을 확실히 한다.
- 수도회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정보 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실천한다.
- 수도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 이미지의 캡처, 사용, 저장과 관련된 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한다.

의사 소통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수도회의 헌신에 대한 정보는 공적으로 알리고 대중에게도 공개한다



- 수도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인과 함께 일하는 곳에서 그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알도록 한다.
- 부모/보호자/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이 학대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한 정보와 조언은 수도회의 공동체/사도직에서 얻을 수 있다.
- 공동체/사도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가 안전보호 담당자이며 어떻게 그들에게 연락하는지 알고 있다.

교육

- 모든 단계의 리더십 팀, 착한목자국제재단(GSIF), 수녀와 관련인은 수도회에 합류할 때 안전보호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관련 인력에게도 안전보호 절차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제공한다.
- 모든 수녀와 관련인은 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
- 관련이 있는 경우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받는다.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는 수녀와 관련인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기술과 지식을 갱신할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 취약한 상황의 아동과 성인에 대한 학대와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하여 혐의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교육이 제공된다.
-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특별한 측면(예를 들어 모집)에 책임이 있는 수녀와 관련인에게 교육과 문서로 된 지침을 제공한다.



9.2 기준 2 학대의 우려, 의혹, 혐의에 대한 대응

기준 2의 성공적인 실행을 보장하는 준칙은 다음과 같다.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의 안전이나 복지에 관한 우려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하는 명료한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보호 절차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 부모/보호자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유효하다. 숙고해야 할 점은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 보호 절차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 및 모범적 실천과 일치한다. 또한 보호 절차는 서로 다른 국가 상황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려한다.
- Unit/국가 차원에서 학대 혐의를 관리하는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사항을 각 지역에 표시해 놓는다.
- 사고, 우려, 위임을 기록하는 과정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기밀 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 부모/보호자와 청소년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에게 가한 용납할 수 없는 학대 행위에 대해 혐의를 다루는 과정이 있고, 고소를 해결해야 할 명확한 기간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내법 적용 지역을 표시하는 지도와 연계망을 활용할 수 있다.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숙고 사항을 분명히 하는 기밀 유지와 정보 공유에 대한 지침이 있다.



수도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언과 지원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많은 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우리 사도직의 맥락 안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이 학대를 당할 때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부모/보호자/아동/성인이 의지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종종 어떻게 도움을 청할지 알지 못한다.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성인의 학대와 관련하여 도움과 조언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수도회의 공동체/사도직 사무실에서 ‘상황을 표시하는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사고, 학대의 혐의나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후 관련된 개인 (피해자/고소인, 수녀와 관련인, 고소 대상자 포함)을 지원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수도회는 이러한 지원을 위해 사람들을 관련 전문가 서비스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 보고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수녀와 관련인은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각 국가/사도직 사무국에 국가 차원, 지역 차원의 연락처가 정해져 있어서 정보, 지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해당 아동보호/복지기관(있는 경우)과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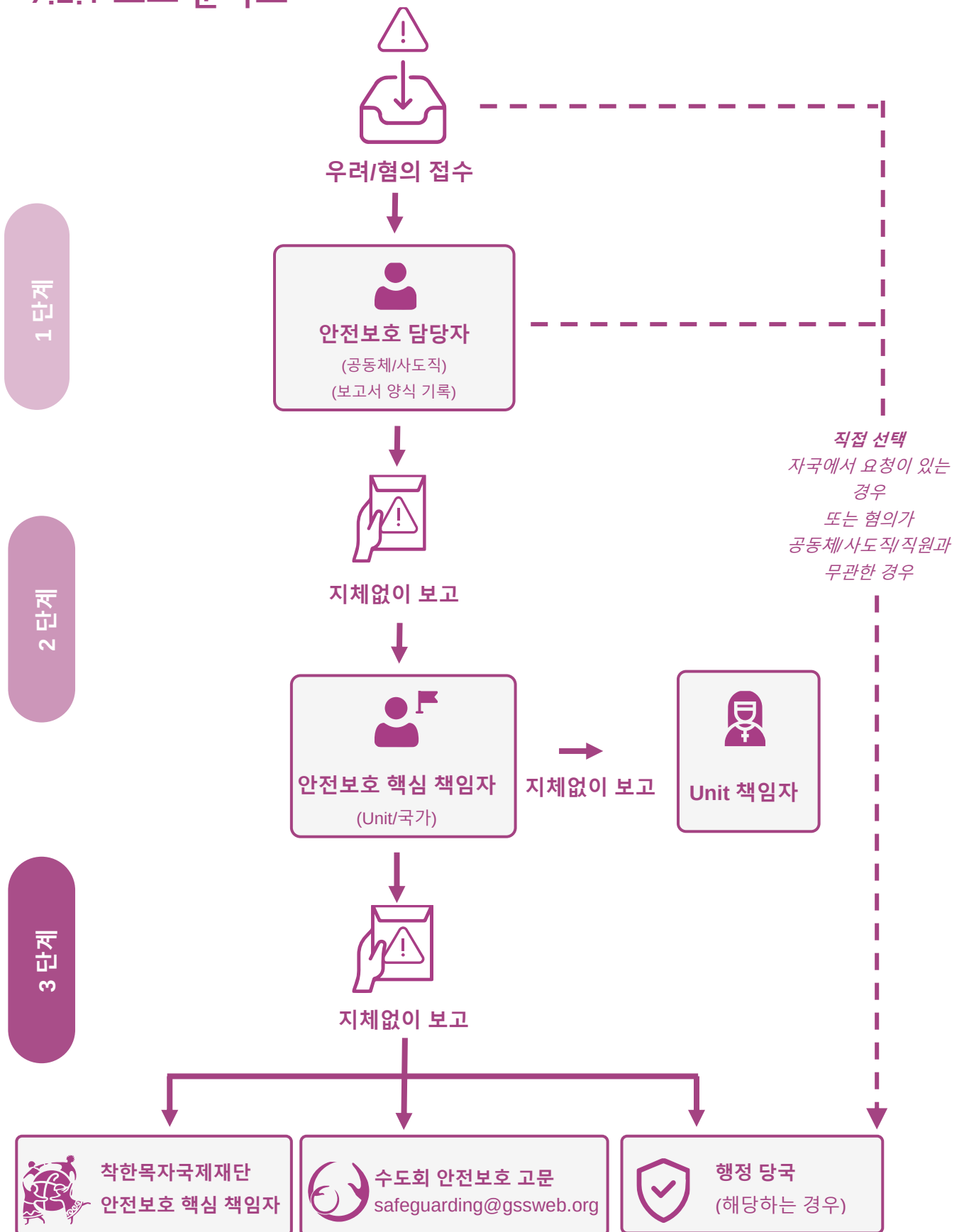


공동체나 사도직, 수녀와 관련인 등의 학대에 관한 모든 우려와 혐의는 수도회의 안전보호 사무국에 이메일로 보고해야 한다.
safeguarding@gssweb.org



기준 2

9.2.1 보고 순서도





협의 접수 후 책임

안전보호 담당자_____

-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작성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국가/Unit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에게 보낸다.
-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가 조언한 경우 공동체 책임자와 사도직 책임자에게 알린다.
- 처한 상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경우 행정 당국에 알리고(기밀 유지 위반 아님)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에게 자신이 한 일을 알린다.
- 조사하는 것은 안전보호 담당자의 역할이 아니다.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_____

- 안전보호 담당자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지체 없이 다음 사람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1) Unit 책임자
 - 2) 착한목자국제재단(보고 사례가 해당할 경우)
 - 3) 수도권 안전보호 고문(메일 주소 safeguarding@gssweb.org)
 - 4) 안전보호 담당자/고소인이 아직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 당국
- 해당할 경우
 - 안전보호 담당자를 지원한다.
 - Unit 책임자에게 사례의 진행 상황을 알린다.
 - 수도권 안전보호 고문의 지도/지원을 통해 예비조사(신뢰성 확립, 위험 평가 및 실행 계획 개발)를 지원한다. 수도권 안전보호 고문의 요청이 없는 한 추가 절차, 예를 들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의 역할이 아니다.



- 사례 파일을 만들어 유지하고, 안전하며 확실한 장소에 보존한다. 파일을 이용할 권리는 Unit 책임자와 사례 해결을 위해 임명된 사람, 즉 외부의 독립적인 조사관으로 제한한다.



Unit 책임자

- 해당하는 경우 교회 당국(주교)에 반드시 서면으로 알린다.
-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를 지원하고 수도회 안전보호 고문과 적절하게 협력한다.
- 고소인, 피해자를 지원한다.
- 고소당한 수녀나 관련인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고소 대상자

-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조사기간 동안 공동체와 사도직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도록 해당자를 돕는다(Unit 행정 설명서 (PAM), 부록 32, 섹션 II).
-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우받으며 드러난 문제와 취해야 할 후속 조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 모든 조사와 영향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는다.
- 조사 후 혐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공동체에 복귀하거나 사도직에 복직할 수 있다. 그러면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고소 대상자는 과정 전반에 걸쳐 본연의 정의와 공정한 절차를 누릴 것이다.



수도회 안전보호 고문

- 수도회 안전보호 고문은 Unit/국가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와 Unit 책임자를 지원한다.
- 수도회 안전보호 고문은 수도회 리더십 팀이 사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게 하고 수도회 안전보호 위원회와 협의한다. 기록은 이용을 제한하며 수도회 차원에서 보관한다.

협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기밀 유지 기준을 준수하며 "알 필요"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교회법 규범

어떤 수녀라도 다음 사실 중 하나를 통보받을 때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지역의 주교나 다른 주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1, 3, 6장 참조).

- a) 모든 수도회의 성직자나 수녀가 저지른 성적 학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I. 폭력이나 위협 또는 권한 남용을 통해 누군가에게 성행위를 하거나 복종하도록 강요한다.
 - II.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인과 성행위를 한다.
 - III. 디지털 방식으로 아동 포르노(아동 학대 이미지)를 생산하고, 전시하며, 소유하거나 배포한다. 뿐만 아니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인을 모집하거나 유인하여 포르노에 노출시킨다.
- b) 수도회 책임자가 행한 민법상 조사나 교회법상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려 한 행동이나 누락으로 구성된 행위. 자신의 임기 중 위에 언급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행정법이든 형법이든 성직자나 수도자로서 걸맞지 않은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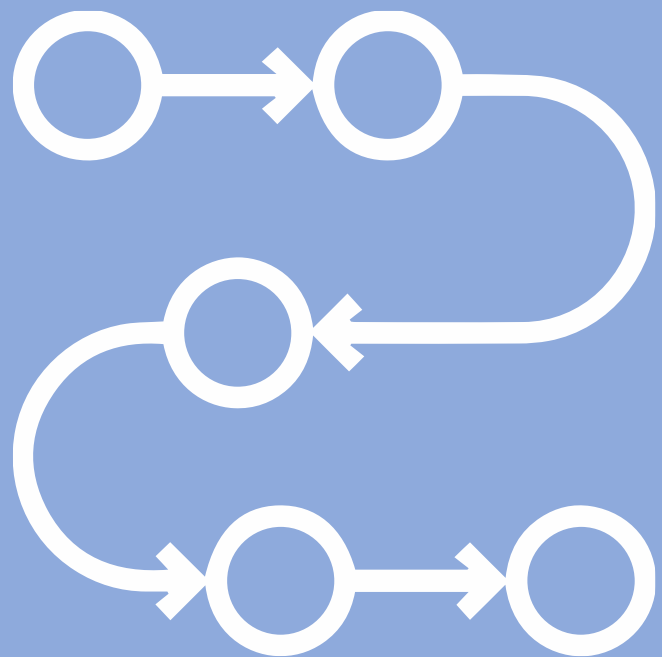
민법 상의 결과 이외에도, 위에서 쓴 것처럼 위법 행위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한 수녀는 교회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교회법 1371조 6항 참조).



9.3 기준 3 기준의 실행과 관찰

기준 3의 성공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준칙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당사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누가 실행의 책임을 지는지, 이러한 실행이 언제 완료될 것인지 서면 계획서로 보여준다.
- 각 단계마다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한다.
- 정책과 실전은 적어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꼭 필요한 경우 수정한다.
- 모든 사건, 학대 혐의, 고소는 Unit/국가 사무국 차원에서 승인한 시스템에 따라 대응하며 기록은 기밀로 유지한다.
-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 준수에 대한 관찰은 정기적으로 수도회 안전보호 팀이 수행한다.



절차

안전보호 실행에 도움이 되는 모든 안전보호 지원 도구 및
지침은 <https://rgs.gssweb.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기준절차1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유지

이 정책의 실행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의 보호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문화를 장려하고 수도회의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지원 문서 및 지침은 수도회 웹사이트 <https://rgs.gssweb.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1 안전한 선발

수도회는 수녀와 관련인을 모집하고 선발할 때 이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숙고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단계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 다음은 안전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0.1.1 직원 모집

수도회는 모집 정책의 필수 요소인 안전한 모집 사례를 택한다. 이는 모집 과정 전반에 걸쳐 따라야 할 안전한 모집 점검표와 안전 보호에 관한 다음 고려 사항을 포함한다.

- 구인 광고
- 직무 설명
- 면접
- 추천서 검토
- 자기진술서
- 계약서
- 경찰 신원 조사/조회
- 자격 및 신원 확인
- 입문과정의 일부로서 안전 보호



10.2 수도권 행동 강령(부록 2 참조)

수도회 행동 강령은 모든 수녀와 관련인의 활동 중의 행위와 태도에 대해 수도권회가 가지는 기대를 표현한다.

그것은 안전 보호의 필수 구성요소이며, 우리와 함께 또는 우리를 위해 일하기로 계약한 수녀와 관련인의 계약 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 행동 강령은 안전 보호와 관련된 직업 생활과 개인 생활 모두에 적용한다. 아동의 안전보호와 성인의 성착취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숙고한다.

행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각 수녀와 관련인은 다음을 약속한다.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고 수도권 안전 보호정책과 관련 지침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다.
-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함을 느끼도록 아동과 성인을 격려하고, 필요한 경우 어디서 어떻게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도록 격려한다.
- 수녀, 관련인, 프로그램 참여자 등이 혼자 있게 되는 일대일 상황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불가피한 특정한 경우라면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한다(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토론함).

10.3 인식 및 교육

수도회는 인식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보호 실천 개선에 중요함을 인정한다. 수녀, 관련인, 공동체/사도직 종사자 모두가 안전보호 기준과 기준 이행 의무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다. 각 수녀와 관련인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진다. 그러나 최소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행동 강령에 대한 입문 교육과 지속적인 보수교육 중에 안전보호 정책을 소개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도 안전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수녀와 관련인이 안전보호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갖추도록 다음 계획을 마련한다.

- 새로운 모든 수녀와 관련인을 위한 수도회의 입문 프로그램은 안전보호 정책을 포함한다.
- 모든 수녀와 관련인은 안전보호 정책의 적절성과 영향에 대한 정보와 업무에 대한 지침 문서를 받는다.
- 모든 방문자가 안전보호 정책을 알게 한다.
- 고발이나 학대 사건 대응에 관여하는 수도회 안전보호 인력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
-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떻게 불만을 제기하는지, 관련 분야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등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정보통신 전략을 개발 중이다.
- 안전보호 정책에 대한 포스터처럼 사무실에 비치하는 소통을 위한 자료는 정책 성명서, 행동 강령 요약, 수녀와 관련인에게서 예상되는 행동, 착취, 학대, 희롱에 대한 불만 제기 방법을 포함한다.
- 안전보호 자료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와 같은 수도회 언어 및 해당 국가의 지역 언어로 제공한다.
- 안전보호 정책에 대한 모든 관련 문서, 양식 및 도구는 수도회 웹사이트 <https://rgs.gssweb.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4 위험도 평가 및 안전 관리

착취, 학대와 같은 안전보호에 관한 고려사항은 위험도 평가 및 공동체/사도직 관리 단계에 포함되어 모든 활동을 안전하고 품위 있게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0.5 스토리와 이미지 기록을 위한 특별 고려사항

우리 공동체/사도직의 스토리와 이미지 수집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전자 통신에 관한 지침 및 정책(2019)”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공동체/사도직은 참가자의 스토리를 수집하거나 이미지(사진, 영화 등)를 기록하려면 사전에 미리 조율하여 방문한다. 방문할 때 반드시 동행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을 준비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이유를 참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가자의 스토리와 이미지 사용을 위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이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아동을 촬영하거나 면접하기 전에 부모/보호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문 후 참가자에게 기사/스토리 및 사진의 복사본을 보내거나 후속 방문 시 제공해야 한다.

10.6 착취, 학대, 희롱의 인식

공동체/사도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어떤 형태이든 사람에 대한 착취, 학대, 희롱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대응 조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수녀와 관련인은 참가자 또는 파트너가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경청하고 고려해야 한다.



11. 기준절차 2 학대의 우려, 의혹, 혐의에 대한 대응

11.1 보고 의무

모든 수녀와 관련인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인에 대해 착취나 학대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을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수도자나 관련자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며, 착취나 학대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학대는 현재일 수 있고, 최근일 수 있으나, 과거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절차의 소관 범위 내에서 보고와 조치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으나, 착취나 학대 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즉시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착취와 학대에 대한 불만과 혐의의 관리에서 비밀이 엄격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허위로 또는 남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혐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신고하는 모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허위로 또는 남을 괴롭히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사람은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었을 경우 징계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를 받으며, 만일 신고인이 관련자라면 해고까지도 포함한다.

11.2 보고 또는 혐의 주장에 대한 대응

수도회는 개인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가할 위험 없이,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다루되 국가적, 법률적, 기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숙고한다. 우리는 조치를 시행하는 각 국가의 합의되고 문서화된 모범 사례를 따른다



11.3 수도회 안전 보호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수녀

- 수녀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인에 대해 저지른 신체적, 정서적, 차별적, 영적 학대와 방임 및 기타 학대는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회헌 172항, 교회법 696 제1항).
- 수녀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인에 대해 저지른 성적 학대는 해고의 근거이며(회헌, 173항, 교회법 695 제1항), 아마도 다른 교회법적, 민법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교회법 1398).

관련인

- 관련인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인에 대해 저지른 신체적, 정서적, 차별적 학대와 방임 및 기타 학대는 수도회와 계약 관계를 종료로 이끌 수 있다.
- 관련인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인에 대해 저지른 성적 학대는 수도회와 계약 관계를 종료로 이끌 수 있고(교회법 1398), 아마도 다른 교회법적, 민법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수도회는 위에서 언급한 행위에 대해 수도회 안전보호 위원회와 협의하여 교회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1.4 잠재적 학대나 착취에 대해 보고 받은 국가 안전보호 인력을 위한 지침

아동/성인 학대에 대한 우려, 의혹, 폭로, 혐의를 접수했을 때 조치 행위.

- 학대의 모든 우려, 의혹, 폭로, 혐의에 대해 즉시 대응한다.
-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부록 3 보고 양식).
-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는 지체없이 Unit 책임자와 수도권 안전보호 고문에게 보고한다(safeguarding@gssweb.org). 해당하는 경우 착한목자국제재단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 가능한 한 어디서든 빨리 기록하고, 즉시 기록하지 못할 경우 그 날이 끝나기 전에 기록한다.
- 모든 정보를 안전보호 사건 보고서 양식(부록 3)에 기록한다. 여기에 기록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써야 한다.
- 사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모든 세부 사항까지 포함해 기록한다.
-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는 안전보호 사례 파일을 엮어서 접근이 제한된 안전한 곳에 모든 정보의 원본을 저장한다.
- 문제가 되는 취약한 상황의 아동이나 성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Unit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는 이 사례를 다룰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 항상 전문적인 기밀을 유지한다.



잠재적인 학대나 착취에 대해 보고하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방법	
접수	경청, 수용
보장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보고된 내용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성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판단도 하지 않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반응	신고인의 말을 막지 않으며 침착하게 열린 질문을 한다.
기록	관찰/검증 가능한 사실(신고인의 정확한 말)
기억	안전보호 지침(및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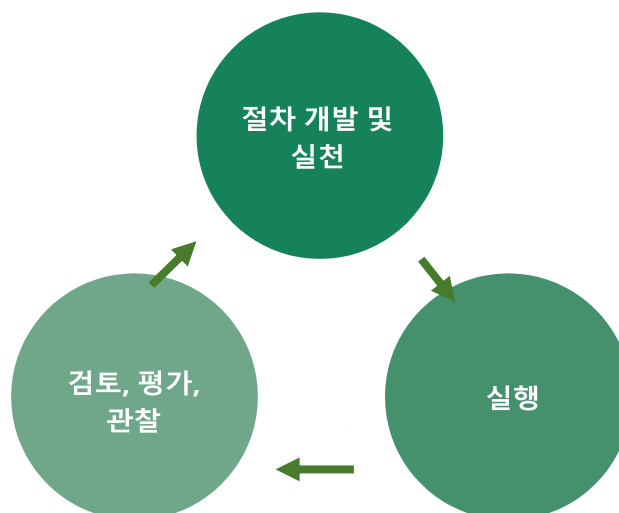


12. 기준절차 3 기준 절차의 이행과 관찰

이 정책의 준수와 안전보호 기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안전보호에 관한 연례 보고서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성인의 안전보호를 포함한 핵심 문제를 강조한다. 이것을 수도회 리더십 팀과 수도회 안전보호 위원회에 제시하며 적절할 경우 수도회 연례 보고서에 이를 참고한다.
- 모든 보고서는 접근이 제한된 서류함/서랍에 넣어 잠그고, Unit 책임자/안전보호 핵심 책임자가 암호로 보호한 파일 등으로 안전하게 기록하여 저장한다.
- 안전보호 검토는 내부 감사 과정의 일부이다.
- 수도회는 안전보호와 관련하여 수도회 안전보호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보고와 신고 유형을 정기적으로 관찰한다.
-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은 수도회 안전보호 위원회와 협력하여 수도회 리더십 팀이 승인하며 3년마다 재검토한다.

12.1 안전보호 관찰 체계





부록

학대 유형	아동	취약한 상황의 성인
정서적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건 유형에서 발견되기 보다 부모/보호자와 아동 간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애정, 인정, 일관성, 안전에 대한 아동의 발달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정서적 학대, 피해나 유기의 위협, 접촉 박탈, 굴욕, 비난, 통제, 협박, 강압, 괴롭힘, 폭언, 서비스나 지원망에서의 고립이나 철회를 포함한다.
방임	아동이 음식, 의복, 따뜻함, 위생, 지적 자극, 감독 및 안전, 성인에 대한 애착과 성인으로부터의 애정, 적절한 의료적 돌봄이나 치료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피해 또는 발달 장애를 겪는 경우로, 부작위(不作爲, omission)*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방임과 부작위는 신체적 의료적 돌봄 요구를 무시하거나, 적절한 건강과 사회적 돌봄이나 교육 서비스 접근이 미비하거나, 약물 치료나 적절한 영양과 난방과 같은 생활 필수여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신체적	때리기, 걷어차기, 흔들기, 던지기, 화상 입히기, 열탕화상 입히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이 아동에게 실제로 또는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신체적 학대는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기방어의 실패나 부작위로 야기될 수도 있다.	때리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밀치기, 걷어차기, 약물 남용, 제약 가하기 또는 부적절한 제재를 포함한다.

학대 유형	아동	취약한 상황의 성인
성적	개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만족감이나 성적 흥분을 위해 아동을 이용할 때 발생한다. 접촉 및 비접촉 성범죄를 포함할 수 있다.	강간과 성폭행, 또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거나 동의하도록 강요당한 성행위를 포함한다.
성착취	취약하고, 힘이 없거나 신뢰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 성적 목적으로 저지른 실제 학대나 학대 미수를 가리킨다. 성착취로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성착취는 성매매와 포르노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인신매매를 포함한다.	취약하고, 힘이 없거나 신뢰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 성적 목적으로 저지른 실제 학대나 학대 미수를 가리킨다. 성착취로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성착취는 성매매와 포르노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인신매매를 포함한다.
성희롱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유발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성적 본성에 대한 달갑지 않은 행동으로 정의한다. 성희롱은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보호시설	학대는 중장기 보호 시설과 긴급 및 단기 보호 시설, 기타 입원환자를 위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학대는 열악한 돌봄 기준, 엄격한 일상, 복합적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포함한다.	학대는 중장기 보호 시설과 긴급 및 단기 보호 시설, 기타 입원환자를 위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학대는 열악한 돌봄 기준, 엄격한 일상, 복합적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포함한다.

학대 유형	아동	취약한 상황의 성인
차별적	차별적 학대는 나이, 장애, 성별과 성전환, 결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임신과 모성, 인종, 종교와 신앙, 성이나 성적 성향에 근거하여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차별적 학대는 나이, 장애, 성별과 성전환, 결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임신과 모성, 인종, 종교와 신앙, 성이나 성적 성향에 근거하여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온라인	온라인 학대는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게임, 휴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학대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사이버 폭력, 온라인 그루밍, 성적 학대, 성 착취, 신체적이나 정서적 학대를 경험할 수 있다.	온라인 학대는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게임, 휴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학대이다.
따돌림	따돌림은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반복하는 공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행하는 공격이다.	따돌림은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반복하는 공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행하는 공격이다.

학대 유형	아동	취약한 상황의 성인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이나 기타 디지털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유해하거나 잔인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보내거나 게시하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기타 디지털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유해하거나 잔인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보내거나 게시하는 것이다.
영적	정서적,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이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 학대는 조작과 착취, 강요된 책임, 의사 결정의 검열, 비밀과 침묵에 대한 요구, 순응 강요, 종교 서적이나 가르침을 이용한 통제, 학대자에게 복종 요구, 학대자가 '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 처벌 수단으로서 격리, 우월성과 엘리트주의를 포함한다.	정서적,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이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 학대는 조작과 착취, 강요된 책임, 의사 결정의 검열, 비밀과 침묵에 대한 요구, 순응 강요, 종교 서적이나 가르침을 이용한 통제, 학대자에게 복종 요구, 학대자가 '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 처벌 수단으로서 격리, 우월성과 엘리트주의를 포함한다.

수도회 행동 강령

나는 다음을 하겠습니다.

- 모든 아동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을 존중하고 연민, 존엄성, 공정성을 가지고 대하겠습니다.
- 내가 만나는 모든 아동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에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 수도회/지역 안전보호 정책을 숙지하겠습니다.
- 개방성, 정직성, 안전성을 개발하겠습니다.
- 모든 아동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아동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나의 행동, 활동, 언어, 그리고 아동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과의 관계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 학대에 대한 우려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 혼자서 아동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과 사적으로 있는 것을 피하겠습니다.

나는 다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 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과소평가하거나, 비하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을 신체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지 않겠습니다.
- 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 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이 어떤 식이든 학대받을 수 있거나 학대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에게 불공평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부적절하거나 불쾌하거나 학대적인 언어의 사용, 제언,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 인종, 문화, 나이,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성향과 관련된 차별적인 행동이나 언어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 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동안, 또는 그들이 있는 데에서는 술, 담배, 불법 약물을 하지 않겠습니다.
- 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과 함께 도발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 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해 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인의 동의 없이 그리고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사람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행동 강령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며 수도회의 안전보호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의 확인 및 이 정보의 적절하고 필요한 공유를 승인합니다.

나는 다음을 읽고 완전히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 지역 안전보호 정책

☐

➤ 행동 강령

☐

➤ 수도회 안전보호 정책

☐

나는 위의 안전보호 정책 및 행동 강령 전체를 수락하고 적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서명: _____ 역할: _____

이름: _____ 날짜: _____

행동 강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 사건, 불만, 보고 양식

이 양식은 공동체/사도직에 참여하는 아동이나 성인에 대한 학대나 착취와 관련하여 사건, 불만,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보호 정책이나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양식은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불만, 우려 사항을 접수하거나 알게 된 시점에서 귀하에게 알려진 세부 사항만 작성하십시오. 이메일로 전달하는 경우 문서가 암호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신자에게 이메일 이외의 방법, 예를 들어 전화, WhatsApp, 문자로 암호를 알려 주십시오.

폭로/우려에 관해서

폭로/우려 날짜: _____

폭로/우려 시간: _____

정보를 어떻게 접수했습니까? (서면 정보를 이 양식에 첨부)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편지 이메일 직접

폭로/우려 제기하는 사람의 세부 사항

이름(인쇄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인쇄체) _____

우려하는 사람이 관련이 없는 경우, 보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안다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려와 관련된 아동/성인의 세부 사항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성별 _____ 출신민족 _____

언어(통역사/서명자가 필요합니까) 예 아니오

장애 유무 _____

학교 (해당하는 경우)

부모/보호자의 세부 사항 (적절하거나 알려진 경우)

이름 _____

주소 (위와 다른 경우) _____

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그들은 혐의, 의심 또는 불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불만 제기 대상의 세부 사항

이름 _____

주소 _____

아동 혹은 성인과의 관계 (해당하는 경우) _____

직업 _____

우려, 혐의, 불만에 대한 세부 정보

(날짜/시간, 사건 발생 장소, 알려진 경우 증인을 포함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불만제기인을 포함하십시오. 아동 또는 성인은 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양식을 작성하는 안전보호 담당자
(수녀/관련인)의 이름:

서명: _____

휴대전화 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날짜: _____

이 양식을 받은 안전보호 핵심 책임자의
이름:

서명: _____

휴대전화 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날짜: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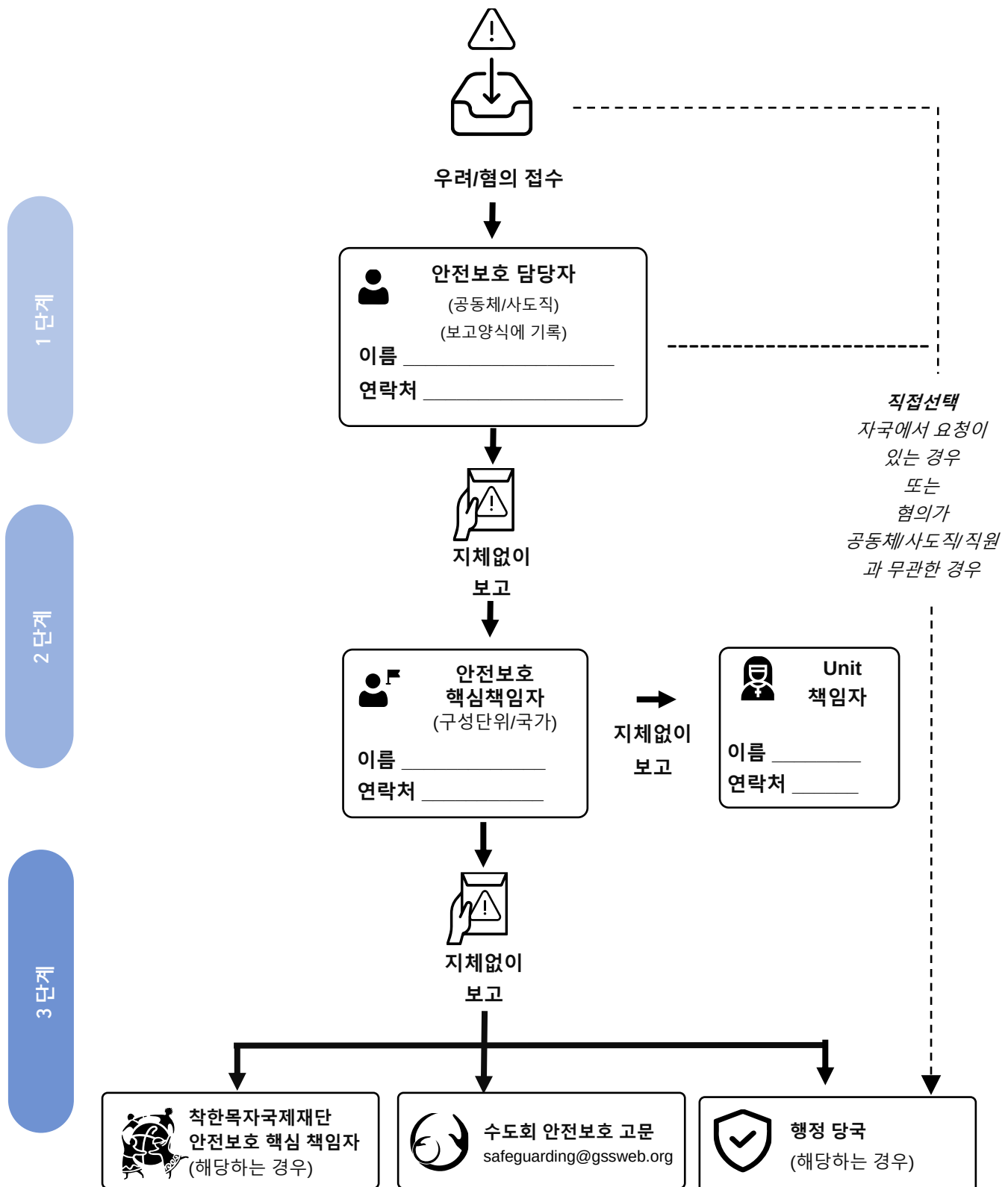
수도회 안전보호 고문은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날짜: _____

관련 문서 목록

-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 회헌, 2009
- Unit행정매뉴얼(PAM), 2015
-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 입장문, 2018
- 지침 및 정책: 인터넷,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전자 통신, 2019
- 수도회 데이터 보호 정책, 2018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
-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1990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2006
- 세계인권선언(UDHR), 1948
- 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 원칙, 2011
- 아동 권리 행사에 관한 유럽 협약, 1996
- 뉴질랜드 권리장전법, 1990
-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뉴질랜드 협회, 1893
- 교회법전, 특히 제2권과 제4권, 1983(및 후속 수정)
- 자의 교서 - 성사의 거룩함을 보호The Motu Proprio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2001)
- 자의 교서 -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The Motu Proprio Vos estis Lux Mundi (2019)
- 중범죄에 대한 규범The Normae de Gravioribus Delictis (2021)

보고 순서도(이름 명시)





착한목자애덕성모수녀회

<https://rgs.gssweb.org>